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13호)

2025.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황충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반려동물 표준진료비 상한제 도입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9. 18.

다. 회 부 일 : 2025. 9.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진찰, 입원 등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위해 가구가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19만 4천원으로, 2023년 대비 26% 증가한 반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2.8%에 그치고 있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을 올려 동물소유자의 진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진료비의 상한액을 매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신설).

Ⅲ. 검토의견

1. 반려동물 표준진료비 상한제 도입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표준진료비의 상한액을 정하고 이를 매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0조의5(표준진료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의3에 따른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표준진료비의 상한액을 정할 수 있다.</u> <u>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진료비의 상한액을 정할 때에는 동물병원 운영비 및 동물의약품 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u> <u>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준진료비의 상한액을 매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에 따른 표준진료비의 상한액 산출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 「수의사법」 제20조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진료비용 게시 의무를 부과하고, 제20조의3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고시하며, 제20조의4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¹⁾하고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 진료비용이 병원별·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이는 동물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실제로 「2025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월평균 지출액은 19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6% 증가하였음. 반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2.8%에 불과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반려동물 진료비용 지출이 부담이 되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표준 분류체계에 따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설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함으로써, 진료비 편차를 완화하여 동물소유자가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예측할 수 있고

1)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3(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0조의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동물병원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를 통해 과도한 진료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진료비 상한액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할 경우, 병원 규모·임대료·인건비 등 지역별·병원별 운영 여건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진료 난이도에 따른 의료서비스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해 자칫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둘째, 2022년 1월 부터 시행 중인 진료비 공개제도, 진료항목 표준분류체계,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현황 분석 공개제도가 정착 단계에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제1차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조사」에서는 수의사 2인 이상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용 게시 의무가 적용되는 11개 항목에 대해 지역별 최저금액, 최고금액, 평균값 및 중간값 등이 조사·공개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진료비 부담 경감 및 병원 간 진료비 편차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진료비 상한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자율적 준수를 전제로 하고, 이를 이행하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확산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²⁾.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진료가 본질적으로 민간 서비스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진료비 상한제 도입은 시장 자율성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과도한 가격 규제는 장비 투자 위축과 진료 서비스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따라서 동물병원의 진료비 상한액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경우 지역별·병원별 운영 여건, 진료서비스의 다양성 및 현행 수의사법상의 진료비용 게시 및 진료비 현황조사 및 공개제도 시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25

2)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2025.09.)

80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공공동물병원 조성,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및 민간 확산(상생동물병원) 추진

-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을 확대하고, 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지원 및 동물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 개요

- **(배경)** 동물 진료의 체계적 발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동물진료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시행('22.1.4. 개정, '24.1.5. 시행)
 - 이에 따라, 동일 질병에 대해서도 동물병원별로 상이한 진료 절차와 함께 진료정보(질병명 및 진료행위명)에 대한 표준화 추진
- **(기대효과)** 동물 진료 절차 표준화에 따른 동물 의료의 투명성·신뢰도 제고 및 동물병원별 진료비 편차 완화 유도과 더불어,
 - 진료 정보 표준화로 동물 의료 통계 생산 및 펫보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

□ 표준화 현황

- **(진료 절차)** 동물병원에서 자주 실시하는 100종*의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표준 진료 절차 연구·개발 및 고시 완료('24~'25.4)
 - * 외이염, 피부염, 중성화수술, 무릎뼈 안쪽 탈구, 고혈압, 당뇨, 변비 등
- **(진료 정보)**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행위명에 대한 표준 분류(코드) 신설
 - **(질병명 분류)** 동물의 종(種)과 질병명의 결합으로 구성되며 동물의 종은 10종*, 질병명은 3,511종**으로 분류하였음
 - * 종명(코드): 가금(A), 소(B), 고양이(C), 개(D), 염소(G), 말(H), 돼지(P), 토끼(R), 양(S), 기타(X)
 - ** 예시) 코드/질병명(한글)/질병명(영문): A00/콜레라/Cholera, B26/볼거리/Mumps
 - **(진료행위명 분류)** 동물의 종(種)과 진료행위명의 결합으로 구성되며 동물의 종은 질병명과 같이 10종, 진료행위명은 4,930종*으로 분류
 - * 예시) 코드/진료행위명: AA160.1/초진(병력청취)-개,고양이, E9001/치과검사(기본 구강검사)

□ 배경

-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 보장 및 동물병원 진료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다빈도 동물 진료 항목에 대한 비용게시 의무화 추진

□ 추진 현황

-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수의사법」 개정, '22.1.4.)

[수의사법]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비용게시 의무 대상 진료 항목 11종* 확정(「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 '22.7.5.)
 - * 진찰비 3(초진료, 재진료, 상담료), 입원비 1, 백신접종비 5(개 및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검사비 2(전혈구 검사, X-ray 검사)
- 동물병원 규모에 따라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단계적 시행
 - * ('23.1.5.) 수의사 2인 이상 종사 동물병원, ('24.1.5.) 수의사 1인 이상 종사 동물병원
- 제1차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조사(수의사 2인이상 병원) 및 공개**('23.8)
 - * 비용게시 의무 대상 진료 항목 11종의 지역별 최저·최고·평균·중간값 공개
 - ** 농식품부 누리집 및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조사·공개 시스템(www.animalclinicfee.or.kr)
- 비용게시 의무 대상 진료 항목 확대(11종 → 20종*) 추진(제도개선 '24.9, 시행: '25.1)
 - * 9종 추가: 백신접종비 1(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 검사비 5(혈액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검사, CT검사, MRI 검사), 예방비 3(심장사상충, 외부기생충, 광범위 구충)
- 제2차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조사(수의사 1인 이상 병원) 및 공개('24.12월)
- 제3차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조사 및 공개 예정('25년 말)